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 - 13호

보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보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 보성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가. 공모사업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비와 사업 완료 후의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나. 이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군비 부담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안 제4조)

다.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안 제5조)

라. 의회 보고(안 제6조)

마. 공모사업 유공자 포상(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6. 11. 16. ~ 11. 23.(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61-850-5848)

- 규칙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보내실 곳: (우 59457)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붙임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보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13호)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붙임2]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 부담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정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관계부서 협의

가.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여부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및 의견 반영 여부

4. 재정 부담의 적정성

가. 국비·통합특별시비·군비 등 재원별 부담 비율

나. 군비 확보 방안

다. 사업 완료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중장기 재정부담

라.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추가 재원 확보 및 군비 부담 증가 가능성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 사업비 집행현황, 추진실적 및 주요 변경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성군 또는 보성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또는 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또는 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이를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공개 시 공모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의회 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

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

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 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 · 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2호

○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보성군의회 서정옥 의원